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송의학원(송의여자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1. 송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의 검토

별첨: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2호서식)

2. 송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

3. 송의대학교 결산서의 검토

별첨: 송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3호서식)

2022년 4 월 8 일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 김 학 선(인)

감사 박 동 철(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556호)

피감사자 (입회인)

송의여자대학교

총무처장 김 현 석(인)


학교법인 송의학원

총무처장 홍 삼 기(인)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 회계연도 2021 년 3월 1일부터 2022 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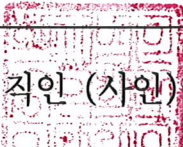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등기오류 자산의 검토</p> <p>가.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확인간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3” 건물 등기 내 소유권관련 사항에서 “소유자: 학교법인 중의학원, 주소지: 중구 예장동 8” 로 기입되어 있어 오류가 있음을 확인함</p> <p>나. 당 승의대학교의 일부 체육관, 유치원, 식당, 학생회관이 공사가 진행 완료되어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기관에서 준공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진행되지 못함.(소송진행중)</p> <p>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p>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등기오류 자산의 시정조치계획</p> <p>가. 등기부등본 상 오류사항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조치 하도록 하겠음</p> <p>나. 당 승의여자대학교의 미등기자산의 경우 1965년부터 1984년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관할청의 건축 허가로 건축한 건물이지만 건물 준공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물 부지 위치가 풍치지구인 관계로 건물 준공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등기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였음.</p> <p>미등기자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임</p> <p>본 지적건이 포함된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미등기자산의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p>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p>직인 (사인)</p> </div>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 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2. 이사회 조직이 학원 정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사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음.</p> <p>3. 이사회는 규정대로 항상 7일 이전에 항상 소집되었고, 회의 진행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p> <p>4. 이사회 회의록 작성은 규정대로 되어 있으며, 참석 위원들의 서명이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공개되었음</p> <p>5. 이사회 소집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의안이 부의되어 심의 의결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음</p> <p>6. 각 학교에서 제청된 교원 임면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정관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되었음</p> <p>7. 이사회 안건 중 위원의 제척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었음</p>	<p>2. 특이사항 없음</p> <p>3. 특이사항 없음</p> <p>4. 특이사항 없음</p> <p>5. 특이사항 없음</p> <p>6. 특이사항 없음</p> <p>7. 특이사항 없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직인 (자인)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여자대학교 결산서의 검토</p> <p>가. 승의여자대학교 결산서상 반영된 당기 홍보비 지급분중 일부건은 20년도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건이 존재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 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하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로 적절히 보고되어야 함)</p> <p>나. 결산서상 미수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사학기관 운영규칙인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에서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으며 미수수익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선급비용, 미지급비용등의 계정은 별도로 결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바, 계정별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p>	<p>가. 결산서에 반영된 당기 홍보비중 20년도 지급의무가 있는 건 -홍보비중 일부 건은 당해 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져 현금주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음. 매년 반복되는 홍보비가 20학년도는 단일 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끝났음. 결산 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은 미지급으로 반영토록 하겠음</p> <p>나. 결산서상 미수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p> <p>특례규칙에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언급되기 이전부터 일반 기업회계 원칙에 의거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성에 원칙에 따라 매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특례규칙에 따라 해당계정을 반영토록 하겠음</p>
<p>피감사기관장 승의여자대학교 총장 박성희 직인 (사인)</p>	

